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 9. 28.>

< 앞면 >

제 호

아동학대조사원증

사 진

3㎝×4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
(성명)

발 급 기 관 명

< 뒷면 >

아동학대조사원증

소 속:
직 급:
성 명: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·질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발 급 기 관 명 직인

1. 아동학대조사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☎ 000) 0000-0000

55㎜×85㎜[백상지(1종) 120g/㎡](색상: 연하늘색)